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66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 검토	3
2. 조문별 검토	7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관련 규정 정비	7
나. 합의권고제도 법적근거 마련	13
다. 직권조정제도 도입	17
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21
마. 소송절차중지제도 도입	2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7. 18.

다. 회 부 일: 2024.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게임·영상·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 2024년에는 총 15,177건이 접수되는 등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주요내용

-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신설).
- 나.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안 제33조 제3항, 제33조의2 신설)
- 다.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 라.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콘텐츠 거래·이용 관련 분쟁조정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정부의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합의권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소송절차중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구 분	주요내용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9조 및 제29조의2~제29조의4 신설)	○ 위원 수 확대: (현행) 10명 이상 30명 이하 → (개정안) 10명 이상 50명 이하 ○ (현행) 전원 비상임 → (개정안) 상임위원 2명 ○ 위원 신분보장 규정 신설 ○ 조정부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
합의권고제도 법적근거 마련 (안 제33조의2)	○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를 통한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직권조정제도 도입 (안 제33조의3)	○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경우 조정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안 제33조의4)	○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소송절차중지제도 도입 (안 제34조)	○ (현행) 조정절차 중 소 제기 시 조정절차 중지 → (개정안) 법원이 소송절차 중지 가능, 소송절차 미중지 시 조정절차 중지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9조¹⁾에 따라 2011년 출범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조정위원의 수는 최대 30명으로,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사무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두고 있음.²⁾

콘텐츠산업의 가파른 성장 및 시장 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분쟁조정 신청 건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2019년 기준 6,638건이었던 전체 신청 건수는 2020년 대폭 증가하여 1만 7,202건을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1만 2,248건을 기록하였음.

-
-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법학 또는 콘텐츠 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콘텐츠 육성 업무 또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⑦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종류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참고] 자료 참조

[연도별 콘텐츠분쟁조정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조정신청				조정처리결과								
	B 2 C	B 2 B	C 2 C	계	조정 취하	조정 거부	유 관 기 관 이 첩	조정 불 능	조정 불 성 립 (1)	조정 전 합 의	조정회의 결과		계
											성 립	불 성 립 (2)	
2014	3,376	153	21	3,550	650	364	106	129	763	1,430	63	45	3,550
2015	2,881	185	21	3,087	743	215	130	73	645	1,124	73	84	3,087
2016	3,961	199	39	4,199	695	513	106	927	825	1,004	52	77	4,199
2017	5,318	134	12	5,464	779	870	202	1,752	890	893	25	53	5,464
2018	4,839	225	20	5,084	706	1,186	125	1,536	609	813	41	68	5,084
2019	6,345	272	21	6,638	879	1,236	189	2,231	613	1,388	30	72	6,638
2020	16,967	222	13	17,202	3,335	2,369	85	6,210	1,668	3,475	12	48	17,202
2021	14,566	135	15	14,716	1,493	2,333	183	5,171	1,852	3,675	3	6	14,716
2022	12,133	84	31	12,248	1,177	1,872	87	3,099	1,868	4,093	19	33	12,248
계	70,366	1,609	193	72,168	10,457	10,958	1,213	21,128	9,733	17,895	318	486	72,188

조정거부: 소송진행중인사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 등

유관기관 이첩: 콘텐츠 분쟁이 아닌 경우

조정불능: 당사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폐업 및 파산 등

조정불성립(1): 조정절차 진행 중 소송제기 및 조정회의 참석 거부 등 응하지 않은 경우

조정불성립(2): 조정안 수락을 거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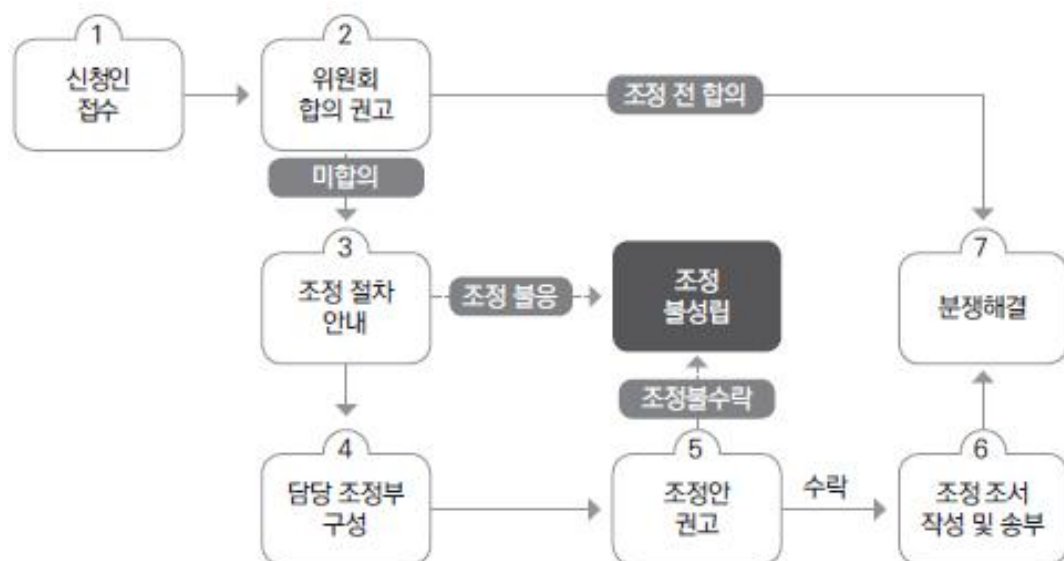
*자료: 2023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규모는 처음 출범한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어 조정업무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어 2019년 10.3%였던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조정불성립’의 비율이 2021년 12.6%, 2022년 15.5%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바, 콘텐츠 관련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정위원의 수를 최대 3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증원하고 조정부의 설치·운영과 합의권고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소송절차중지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 및 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하여 콘텐츠 분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아울러,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의결한 바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³⁾

[참고: 현행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자료: 2023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3) 개정안과 동일 내용에 더하여 조정위원회를 ‘조정·중재위원회’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의 ‘조정’ 외에도 ‘중재’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당시 이상현의원안)을 반영한 대안을 2023. 1. 31. 의결하였으나, 해당 대안은 2023. 2. 16.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23. 5. 24.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중재’ 절차의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의견 등으로 인하여 처리되지 못하였음. 이후 위 대안은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본 개정안은 당시 대안에서 이견이 제기되었던 ‘중재’ 관련 부분 등을 제외하여 재차 발의된 것임.

2. 조문별 검토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및 관련 규정 정비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50명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전원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삭제하고 2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며,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분쟁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정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u><신설></u>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u>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u> 1. <u>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u> 에 관한 사항 2. <u>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③ (현행 제6항과 같음) <u>제29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u>
⑥ (생략) <u><조 제목 신설></u>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 5. (생략)

④ (생략)

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① -----
----- 50명 -----
-- 구성하며,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29조제4항과 같음)

④ 위원의 -----
-----.

⑤ (현행 제29조제7항과 같음)

⑥ -----
----- 대통령령으로 -----.

제29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9조의4(조정부) ①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판사

	<u>·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u> <u>② 조정부의 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u> <u>③ 조정부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④ 제2항에 따라 조정부가 내린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본다.</u> <u>⑤ 그 밖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29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제3항에----- ----- ----- ----- ----- ----- -----.

2) 검토의견

먼저, 안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위원 수 확대 및 상임위원 신설 등은 현행 조정위원회의 업무 부담 정도 및 개정안에 따른 신규 제도의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이라 할 것인바,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 다른 분야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위원 수 및 조정신청 건수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은 위원 수 확대 및 상임위원 신설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유사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위원 수 및 연간 사건접수 건수 비교]

구 분	최대 위원 수	상임위원 수	연간 사건접수 건수 (2022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0명	-	12,248건
한국저작권위원회	25명	1인(위원장)	103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00명	-	76건
언론중재위원회	90명	5인(위원장 포함)	3,175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50명	5인(위원장 포함)	4,119건

다만,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⁴⁾에 따라 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다음, 안 제29조의2제2항·제6항은 조정위원의 임명·위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정위원의 세부 자격 및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조정위원의 임명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 제29조의2제2항의 위임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바,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안 제29조의3의 신설은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음, 조정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안 제29조의4의 경우 분쟁의 대상이 된 금액이 소액이거나 쟁점이 간단하고 반복적인 등의 경우까지 모두 조정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또한, 이러한 조정부의 결정은 분쟁해결에 있어 사실상의 준사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그 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은 근거 규정의 신설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재도 이미 아래 표와 같이 조정위원회가 위원회 내부규정⁵⁾을 근거로 하여 7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운영하면서 조정부의 결정을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연도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 개최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전원회의			분과회의			조정부회의		
		계	출석	서면	계	출석	서면	계	출석	서면
2014	109	3	3	-	-	-	-	106	96	10
2015	159	1	-	1	-	-	-	158	148	10
2016	123	1	-	1	4	4	-	448	114	4
2017	109	1	-	1	4	4	-	104	91	13
2018	116	1	1	-	2	6	-	113	104	9
2019	116	-	-	-	4	4	-	112	102	10
2020	94	1	1	-	1	1	-	92	91	1
2021	12	1	1	-	2	2	-	9	8	1
2022	68	2	2	-	2	2	-	64	62	2
합계	906	11	8	3	19	19	-	876	816	60

*자료: 2023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다만, 안 제29조의4제1항은 조정부의 위원 중 ‘2명 이상’이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경우 1명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1명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⁶⁾

5) 「콘텐츠 분쟁 조정규정」 제5조(조정부) ① 위원장은 각 사건마다 조정장을 포함한 1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명하여 조정부를 구성하고 당해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부가 위원회의 위임에 의해 제4조 제2항 제1호의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조정부는 위원회로, 조정장은 위원장으로, 조정부의 결정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6)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같은 의견임.

나. 합의권고제도 법적근거 마련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를 통한 조정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조정 효력) ①·② (생략) ③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 설>	제33조(조정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락하거나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④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제33조의2(합의권고) ① 조정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 권고는 조정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검토의견

‘합의권고’는 제3자의 매개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자주적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알선(斡旋, conciliation)’의 일종으로, 본격적인 조정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위원회 사무국 등의 주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함.

「개인정보 보호법」⁷⁾ 및 「전기통신사업법」⁸⁾ 등을 비롯한 유사 분쟁조정절차에서도 조정 전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이미 내부 규정⁹⁾에 따라 조정 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본격적인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분쟁조정처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12,248건의 조정신청 중 실제로 처리가 가능했던 유효건수 6,013건을 기준으로 68.1%에 해당하는 4,093건이 ‘조정 전 합의’로 종결되었는바, 이미 합의권고의 방식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8)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분쟁조정 절차)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9) 「콘텐츠 분쟁 조정규정」 제20조(조정 전 합의 등)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수용하거나 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전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간 상당한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제18조의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 전 합의 의사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합의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정회의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조정회의에 사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단 조정회의 상정 전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조정의 불성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정 없이 즉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전 합의가 성립한 경우 합의사항을 통지하여 사건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합의권고에 관하여 별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는 조정 전 합의에 대하여 일반적인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만이 부여되고 있는바,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있었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실정임.

[재판상 화해와 「민법」상 화해의 구분]

구 분	내 용	근거 규정	기판력
재판상 화해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제461조	있음
민법상 화해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계약	「민법」 제731조, 제733조	없음

이에 개정안은 합의권고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신설하면서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¹⁰⁾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미 조정신청 및 합의권고 등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에 근접하게 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조정절차 전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례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10) 재판상 화해에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조정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함.

래에 관한 법률」 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2) 등이 있음.

-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1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조정절차 중 합의) ① 신청인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한 후 조정절차 진행 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부는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조정부는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 직권조정제도 도입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의 경우 조정부가 조정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 -----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서를 작성한 때	1. 조정조서, 직권조정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경우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33조의3(직권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 29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의견

‘조정’은 소송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조정인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과적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송과는 달리 조정절차 참여 여부 및 조정안의 수락 여부 등이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직권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직권조정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시에는 해당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각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일반 조정과 직권조정결정의 조정 성립요건 비교]

구 분	조정 성립요건
일반 조정	5일 이내 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직권조정결정	14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입법례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¹³⁾, 「저작권법」¹⁴⁾, 「전기통신사업법」¹⁵⁾ 등이 있음.

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중재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14) 「저작권법」 제117조(조정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분쟁조정 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조정부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직권조정결정서에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15)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라.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콘텐츠 이용 관련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경우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제30조(분쟁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제34조에 따라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청과 제3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 -----의뢰 또는 신청이----- ----- -----.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2.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⑤ · ⑥ (생 략)

<신 설>

④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분쟁조정の特례) ① 제30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
자치단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는 이용
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
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
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
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
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
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

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③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 당사
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
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
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
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
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
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집단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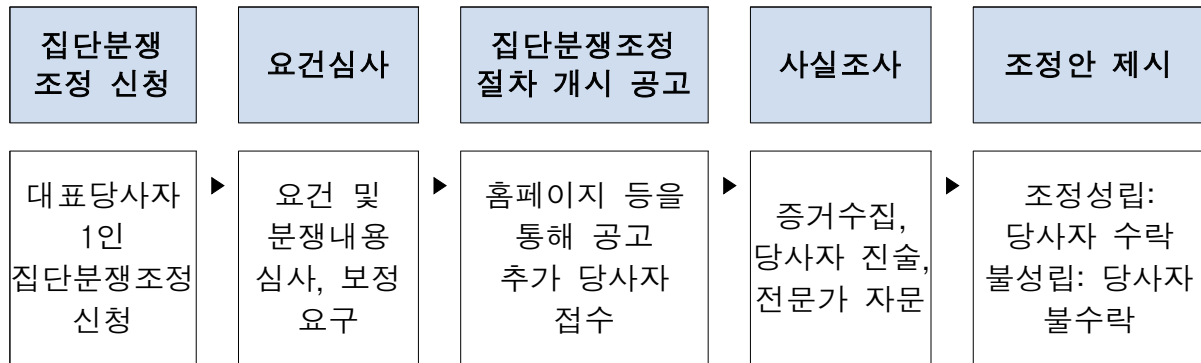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구체적 으로 밝혀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

2) 검토의견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괄적 분쟁조정을 의뢰·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1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개인정보 보호법」 18) 등에서 이를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

- 16)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1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 18)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은 콘텐츠 분야의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이를 통해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의 선정으로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분쟁조정 상대방인 사업자 등의 입장에서든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할 것인바,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아울러,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도 다수 이용자들이 동일 사건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¹⁹⁾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

19) 참고: 동일 사건에 대한 집단적 조정신청 사례

- 티빙의 '철인황후' 콘텐츠 이용 중단에 따른 이용자 불만 41건 접수(2021)
- 넥슨 '바람의 나라 : 연' 콘텐츠 품질 및 아이টে에 대한 이용자 불만 47건 접수(2020)
- 나트리스 '무한돌과 삼국지 리버스' 약관 및 운영정책 관련 불만 등 97건 접수(2021)

한편, 최근(2024.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한 피해자 약 5천여명이 넥슨을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으나, 콘텐츠

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안과 같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음.

다만,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콘텐츠 기업 등의 입장에서 분쟁조정 신청의 남발에 따른 부담이 우려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사례와 같이 ‘합의금’이나 ‘수임료’ 등을 노리고 집단적인 분쟁을 기획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츠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연합뉴스,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피해자 5천명 집단분쟁조정 개시”, 2024.4.29. 등 기사 참조

마. 소송절차중지제도 도입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조정절차 중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생략) <u><신 설></u>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u>②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u>
<u>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 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u>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34조제2항²⁰⁾은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소요되는 소송절차 대신 조정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소법원(受訴法院)이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송절차 대신 조정절차를 통한 효율적인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아울러, 이용자가 조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자의 소 제기로 인해 조정절차가 중지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갈 경우 사업자에 비해 시간적·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취약한 이용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도, 개정안과 같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입법례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²¹⁾, 「환경분쟁 조정법」²²⁾ 등이 있음.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76

-
- 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1조(소송과의 관계) ①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22)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소송과의 관계) ①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인재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같은 종류의 사건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환경분쟁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분쟁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진행되는 원인재정 절차에 필요한 비용 중 제63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본다.

□ 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운영연혁) '11.4. 조정위원회 사무국 신설 및 조정위원회 출범
- (위원구성)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 * 위원은 전원 비상임, 위원장은 호선, 임기는 3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자격기준) ▲법학 또는 콘텐츠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자, ▲콘텐츠 및 콘텐츠사업 학식과 경험 보유자, ▲이용자 보호기관 또는 단체 소속된 자 등

구 분	계	법조계	학계	콘텐츠 전문가	이용자 보호	여성비율	법조비율
5기 ('23.5~'26.4)	30명	14명	4명	10명	2명	12명 (40.0%)	14명 (46.7%)

- (예산) ('23) 442백 만 원 *운영지원, 상담센터, 피해실태조사 등

□ 기능 및 주요 실적

- (기능)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조정효력: 재판상 화해*)

< 분쟁 예시 >

- (콘텐츠사업자간 분쟁)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와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도중 방송사 사정으로 당해 프로그램 방영이 폐지되어, 외주제작사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쟁
-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 게임콘텐츠 계정정지, 게임내 버그를 악용한 이용자에 대한 처분, 이러한 콘텐츠 서비스 부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 (콘텐츠이용자간 분쟁) 콘텐츠 이용자가 하지있는 콘텐츠 상품을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

* 재판상 화해 : 소송행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며, 항소기간이 지나면 최종심이 되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음

- (실적) '23년 조정접수 15,177건, 조정전합의 5,685건 등

구분	조정 접수	조정 취하	조정 거부	유관 기관 이첩	조정 불능	조정 불성립	조정 전 합의	조정 회의결과		진행
								성립	불성립	
2019	6,638	879	1,236	189	2,231	613	1,388	30	72	-
2020	17,202	3,335	2,369	85	6,210	1,668	3,475	12	48	-
2021	14,716	1,493	2,333	183	5,171	1,852	3,675	3	6	-
2022	12,248	1,177	1,872	87	3,099	1,868	4,093	19	33	-
2023	15,177	1,221	2,299	103	2,928	2,347	5,685	11	23	560